



소 방 청

수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유치원) 및 학교 분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회신

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노조-6(2025. 2. 3. , "학교(유치원) 및 학교 분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질의")호와 관련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1) 연면적이 2천 m^2 미만이면서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연면적 400 m^2 미만 이면서 노유자 시설인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자동화 재탐지설비가 (자진 설비로) 의무 설비가 아니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답변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대상) 5)에서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2천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연구시설이 연면적이 2천 m^2 미만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 된 대상인 경우는 자진설비로 판단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할 규정」 제5조 제1항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판단은 공공기관의 특성, 근무 인원, 건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2) 학교 건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건물에 상시근무자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본교에 상주하는 자를 분교장에는 선임할 수 없는게 맞는지

(답변 2)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교장 또한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질의 3) '가'와 관계하여 선임 의무가 없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 내 (각종 사고 시) 책임의 주체는 누가 되는지

(답변 3) 「소방시설 설치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질의 4) 귀 청은 학교 내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보는지

(답변 4) 답변 2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화재예방총괄 전결 2025. 02. 14.
소방위 이종구 과장 직무대리 김근식

협조자

시행 화재예방총괄과-879 (2025. 02. 14.) 접수 M00013230941 (2025. 2. 17.)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나성동) / www.nfa.go.kr

전화번호 044-205-7443 팩스번호 044-205-9120 / skywhdrn@korea.kr / 비공개(5)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